

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 
(강남문화생태계조성사업)

# 심사보고서

2024. 11. 27.

복지문화위원회

의안 번호	455
----------	-----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11. 04. 강남구청장(문화도시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(2024. 11. 27.)  
“원안가결”

## 2. 제안설명 요지(미래문화국장 : 문경수)

가. 제안이유

-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‘강남문화생태계 조성사업’ 과 관련된 예산을 강남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의거 미리 강남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사업명 : 강남문화생태계조성사업
- 추진근거
  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  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○ 필요성 : 강남구에 소재한 문화예술단체들이 관내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개발·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연 필요

○ 소요예산 : 86,310,000원(출연금 31,810천원, 이월금 54,500천원)

#### 다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
○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세부 자료 : 동의안 별첨 자료 참고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이미영)

○ 본 건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“강남문화생태계 조성사업” 과 관련된 예산을 강남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강남구의 회에 미리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상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동의안 제출 배경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, 예산안 심의 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.

○ 강남문화생태계 조성사업은 강남구의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문화예술기관들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, 강남의 각종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남구 관내 문화예술 관련 단체,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함.

○ 동의안에 따르면 총 사업비 8,631만원 중 출연금 편성액은 3,181만원이고, 5,450만원은 이월금으로 편성함.

- 그런데 본 사업은 2024년 출연금 미편성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재단 이월금 1억 6,450만 5천원으로 추진된 바 있는데, 2025년에는 사업비 일부를 출연금으로 편성하려는 사유 및 재단의 이월금 사용 기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.

- 또한, 부서의 자료 확인 결과 2024년도 출연금 편성 사업이었던 “아트큐브강남 운영(24년 사업비 18,455천원: 출연금11,455천원, 이월금 7,000천원)” 을 2025년에는 “강남문화생태계 조성사업” 에 통합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. 두 개 사업을 통합 추진할 계획임에도 예산 규모가 축소된 사유와 그동안의 사업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.

**<2024년 대비 2025년 사업 변동 사항>**

2024년	⇒	2025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아트큐브 강남 운영 사업비 18,455천원(출연금11,455천원, 이월금 7,000천원)</li> <li>○ 강남문화생태계 조성사업 사업비 164,505천원(전액 이월비)</li> </ul>	⇒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강남문화생태계 조성사업 사업비 86,310천원(출연금 31,810천원, 이월금 54,500천원)</li> </ul>

(자료: 문화도시과 자료 재구성)

- 본 사업은 강남구에 소재한 문화예술단체들이 관내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개발·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예술축제를 개최하여 구민이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,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- 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없음”**
- 5. 토론 요지 : “없음”**
- 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**
- 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**
-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**

붙임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(강남문화생태계조성사업). 끝.

#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(강남문화생태계조성사업)

의안 번호	45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11. 4.

제출자 : 강남구청장

제출부서: 문화도시과

## 1. 제안이유

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‘강남문화생태계 조성사업’과 관련된 예산을 강남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의거 미리 강남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사업명 : 강남문화생태계조성사업

나. 추진근거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다. 필요성 : 강남구에 소재한 문화예술단체들이 관내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개발·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연 필요

라. 소요예산 : 86,310,000원(출연금 31,810천원, 이월금 54,500천원)

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-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세부 자료 : 별첨

# ‘강남문화생태계조성사업’ 운영 계획

강남구의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문화예술기관들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, 강남의 각종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.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명 : 강남문화생태계조성사업
- 사업기간 : 2025년 1월~12월
- 총사업비 : 금86,310천원(출연금: 31,810천원, 이월금: 54,500천원)
- 대상 : 강남구 관내 문화예술 관련 단체, 기관 등
- 사업내용
  - ① 콘텐츠 컨설팅 프로그램
    - 강남구에 소재한 문화예술단체들이 관내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개발·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
    - 콘텐츠를 개발·개선 후 <예술축제> 개최 ⇒ 구민이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

구분	세부내용
지원 기간	2025년 4월~11월
지원 자격	강남구 관내 문화예술단체 ※ 2024년 참여 예술단체 대상 가산점 부여 ⇒ 사업 연속성 확보
지원 규모	총 5개 단체 내외
지원 내용	① 콘텐츠 관련 컨설팅 제공 (참여단체 당 35시간 내외) - 콘텐츠 관련 외부전문가 섭외 예정 ② <예술축제> 공모사업 개최 - 공연/전시 참가 기회 제공 - 심사 및 공모를 통해 대상 선정 - 자부담 필수

- 발굴-육성-지원으로 이어지는 컨설팅을 통한 ‘육성’ 과 콘텐츠의 창작 및 발표를 위한 ‘지원’ 으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
-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1항 1호에 명시된 문학, 미술, 음악, 무용, 연극, 영화, 연예, 국악, 사진, 건축, 어문, 출판, 만화, 게임,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의 문화예술 자원을 활

용하여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

② <아트큐브-강남> 운영

- 협력기관 지속발굴, 네트워크 강화 및 홍보 시너지 창출
- 기관 및 단체 별 공동추진 가능한 사업 발굴 및 문화생태계 조성

○ 추진계획

- 2025년 1월 : 기본계획 수립
- 2025년 2월~3월 : 컨설팅 지원 예술단체 및 자문위원 확정, 사업 오리엔테이션
- 2025년 3월,6월,9월 : 분기별 <아트큐브-강남> 협력기관 간담회 추진
- 2025년 4월~11월 : 컨설팅 제공
- 2025년 11월 : <예술축제> 개최

□ 추진효과

- 강남 문화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
-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창출에 기여
-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콘텐츠 제공으로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

□ 산출내역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	예산액	전년도 당초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예산액	전년도 당초예산액				
계		86,310	182,960	△96,650	△52.8%
[일반운영비(201)]		85,910	22,960	62,950	274.2%
[사무관리비(01)]	[사무관리비(01)]	11,800	2,800	9,000	321.4%
1. 위원회 등 운영수당	1. 위원회 등 운영수당				
가. 심사위원 참석수당 150,000원×2회×7명=2,100,000원	가. 심사위원 참석수당 150,000원×1회×7명=1,050,000원				
나. 2시간 초과수당 50,000원×2회×7명=700,000원	나. 2시간 초과수당 50,000원×1회×7명=350,000원				
다. 컨설팅자문위원 참석수당 150,000원×3회×5명=2,250,000원	가. 자문위원 참석수당 150,000원×1회×7명=1,050,000원				
라. 2시간 초과수당 50,000원×3회×5명=750,000원	나. 2시간 초과수당 50,000원×1회×7명=350,000원				
마. 아트큐브 간담회 참석수당					

편성목별		예산액	전년도 당초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예산액	전년도 당초예산액				
150,000원×3회×10명=4,500,000원 바. 2시간 초과수당 50,000원×3회×10명=1,500,000원					
<b>[행사운영비(03)]</b>	<b>[행사운영비(03)]</b>	73,000	19,500	53,500	274.4%
1. 행사일반운영비 가. 홍보물 제작비(디자인인쇄출력) 3,000,000원×1회=3,000,000원 나. <예술축제> 운영지원비 14,000,000원×5개단체=70,000,000원	1. 행사일반운영비 가. 홍보물 제작비(디자인인쇄출력) 3,000,000원×1회=3,000,000원 가. 아트클러스터 영상콘텐츠 제작 1,650,000원×10회=16,500,000원				
<b>[회의비(04)]</b>	<b>[회의비(04)]</b>	1,110	660	450	68.2%
1. 심사위원 회의진행비 15,000원×7명×2회=210,000원 2. 용역업체 회의진행비 15,000원×5명×6회=450,000원 3. 아트큐브 간담회 진행비 15,000원×3회×10명=450,000원	1. 심사위원 회의진행비 15,000원×7명×1회=105,000원 1. 자문위원 회의진행비 15,000원×1회×7명=105,000원 2. 협력기관 간담회 진행비 15,000원×3회×10명=450,000원				
<b>[업무추진비(203)]</b>		400	0	400	순증
<b>[사업업무추진비(07)]</b>		400	0	400	순증
1. 사업운영업무추진비 100,000원×4회=400,000원					
<b>[연구개발비(207)]</b>		0	160,000	△160,000	△100%
<b>[연구용역비(01)]</b>	<b>[연구용역비(01)]</b> 1. 컨설팅업체 용역비 20,000,000원×8월=160,000,000원	0	160,000	△160,000	△100%

작성자 : 문화도시과 문화예술팀 행정8급 김민영(☎ 02-3423-5935)